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7가합53411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피고1. A 주식회사

2. B

3. C

4. D

변론 종결2018. 3. 22.

판결 선고2018. 4. 12.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443,544원 및 그중 378,830,061원에 대하여 2017. 4. 5.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72,687,5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D은 원고에게 72,687,5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원고와 체결한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11. 8. 30. 및 2014. 11. 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때에 피고 B(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2011. 8. 26.	180,000,000원 (170,000,000원)	2012. 8. 24. (2017. 8. 18.)	E	2011. 8. 30.	2017. 8. 18.	200,000,000원	중소기업 자금대출
2	2014. 11. 5.	207,000,000원	2015. 11. 5. (2017. 11. 3.)	F	2014. 11. 6.	2017. 11. 3.	230,000,000원	중소기업 자금대출

2)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 B는, 피고 A가 대출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 권리보전비용 등 부대채무를 연대하여 상환하되,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피고 A에 대하여 경매신청이 있는 때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3)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2. 30. 인천지방법원 G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고 A가 위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4. 5. 중소기업은행에 379,683,061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171,341,089원(= 원금 1억 7,000만 원 + 이자 1,341,089원) +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08,341,972원(= 원금 2억 700만 원 + 이자 1,341,9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제2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회수금 853,000원을 변제충당하였고 그 확정손해금은 233원이며 위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해 613,250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으며 2016. 2. 1. 이후로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0%이다.

나. 피고 C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

- 1)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 2016. 12. 20. 피고 A와 사이에 인천 남구 H(피고 A의 주소지와 같다)에 있는 사무실, 공장을 임차목적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만 원에 '본 공장의 1/2을 사용하며 공과금 및 사용료는 50%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2) 피고 C는 2017. 1. 4. 위 '인천 남구 H'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T'라는 상호의 자동화시스템 제작업체를 설립하고 2017. 1. 9.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3) 피고 C는 2017. 1. 10. 피고 A와 사이에 자동화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기계, 집기 등을 대금 6,090만 원(네고 3,000만 원으로 기재)에 양수도하는 내용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B 소유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피고 B는 2017. 1. 20.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처조카인 피고 D와 사이에 대금 2억 1,3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1. 23.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26704호로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B,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B 부분

피고 A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부분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란 '영업상의 활동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5862 판결 참조), 피고 C가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정과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피고 A의 중소기업자금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 C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C는, 피고 A에 대출한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C가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C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 C는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체가 2017. 9. 30. 폐업하였다는 내용의 2018. 3. 29.자 참고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 C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79,443,544원[= 대위변제금 잔액 378,830,061원(대위변제금 379,683,061원 - 회수금 853,000원) + 확정손해금 233원 + 법적절차비용 613,25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378,830,06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4.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7. 8. 22.까지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 20. 당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아직 실제로 성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이전인 2011. 8. 26.과 2014. 11. 5. 이미 위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인 2016. 12. 30. 피고 A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이미 피고 A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연대보증인인 피고 B로서는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발생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여 후인 2017. 4. 5. 원고의 대위변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 20. 당시 시세가 2억 2,4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2. 11. 28.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7. 1. 13.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7,920만 원으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1,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득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바, 피고 B가 피고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이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D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 D은, 피고 B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급하게 처분한다는 것만 알고서 이를

정당한 대금을 치르고 매수하였을 뿐 이로써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에 있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바, 피고 D이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D은 피고 B의 처조카인 점, 아파트 매매계약서상 아파트 인도일이

'2017. 1. 20.'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B의 처인 피고 C가 2017. 6. 16.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을다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원상회복의 방법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마쳐진 위 1,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 26.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피고 D과 피고 B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 2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억 2,400만 원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고, 갑 제7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말소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변제된 피담보채무액은 151,312,482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72,687,518원(= 2억 2,400만 원 - 151,312,48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72,687,5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김지나

판사김근홍

별지